

2020년도 CEO 경영성과 계약서

2020. 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평가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 이라 한다)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과 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경영목표, 제8조의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제11조의 기본연봉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기간 중 매년 갱신한다.

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설립 및 운영 조례” 라 한다), 공사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설립 및 운영조례, 공사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매 사업연도 단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사장의 해임사유(별표7) 외에 이사회의 건의를 받아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 사장은 공사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사와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공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6조(경영목표) ① 사장은 예산절감, 부채감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3』 과 같다.

③ 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경영실적 보고) 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실적평가” 라 한다)는 시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표치와 기준치는 『별표 4』 와 같다.

③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 5』 과 같다.

④ 이행실적평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및 면담 등 요구 시 사장 및 공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① 사장의 경영성과(“시장이 평가하는 이행 실적평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기본연봉 및 평가급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사장에만 적용한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보수체계) 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평가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본연봉) ① 사장의 임기 중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⑤ 사장이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평가급) ① 사장의 평가급은 시장이 정하는 지급율에 기본연봉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평가급 지급시기는 평가급이 확정된 연도의 1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 사장에게 연봉 및 평가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수 지급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퇴임한 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사장이 그 금액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사장이 재임시 지급받은 연봉액, 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리후생 등) ① 공사는 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16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기간 중 『별표 3』의 경영목표

및 『별표 4』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제6조 제2항과 연계하여 매년 변경한다. 단, 변경의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인천광역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8조(권리의 귀속) 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19조(세금) 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2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지방공기업법」 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교통공사 정관」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사장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하여 이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함.

2020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
박 남 춘

인 천 교 통 공 사
(인)
사장 정 희 윤

< 별 표 >

- | | |
|-----------------------------|----|
| 1. 연봉액 | 1부 |
| 2. 2020년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 1부 |
| 3. 2020년 CEO 경영목표 | 1부 |
| 4. 2020년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 | 1부 |
| 5.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 1부 |
| 6. 연임 보장기준 | 1부 |
| 7. 임기중 해임기준 | 1부 |
| 8. 기본연봉 조정표 | 1부 |
| 9. 평가급 지급률 | 1부 |

< 별표 1 >

연 봉 액

□ 연 봉 액 : 금구천육백삼십삼만오천오백오십원(₩96,335,550)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계		96,335,550
기본연봉	소계	84,335,550
	기본급	7,027,960원 × 12월
부가급여	소계	12,000,000
	직책수행비	1,000,000원 × 12월
경영성과급	평가급	시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별도 지급

※ 2020년 2월에 체결한 『2020년도 CEO 경영성과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봉액에는 제 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외의 기타 금전적 수당을 받을 수 없음.

2020년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MISSION → 최고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 추구

VISION → 고객의 행복 신고, 세계로! 미래로!



2020 경영목표 → 안전사고 Zero, 고객만족, 사회적 가치 선도 교통공기업

경영전략 (5대 전략)

절대안전 확립	고객감동 경영	경영효율 달성	조직역량 강화	사회적가치 실현
------------	------------	------------	------------	-------------

전략과제 (11개 과제)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	고객접점서비스 품질 향상	수송수입 증대 총력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인프라 확충	쾌적하고 편리한 고객 이용환경 개선	부대사업 역량 강화	소통·공감 조직 문화 구현	공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2020년 CEO 경영목표

구분	분야별과제	세부추진지표	2020년 목표치	가중치 (%)	비고
공통지표 <45%>	① 경영평가(40점) (정량100)	1.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	•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 반영	40	정량40
	② 경영혁신 추진 (5점) (정량60,정성40)	1. 청렴도 향상	•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 달성도 평가 - 개선도 평가	2	정량 2
		2. 여성임원 및 여성위원 확대	• 여성임원 및 여성위원 확대 성과 • 여성임원 및 여성위원 확대 노력	3	정량 1 정성 2
개별지표 <55%>	③ 시정핵심과제 추진 (30점) (정량60,정성40)	1. 도시철도 운행사고 제로화 추진	• 도시철도 사고 및 장애 최소화 - 운행장애 최소화(연간1건 이내) - 철도사고 Zero(무사고) 달성 • 도시철도 안전도 향상노력	16	정량10 정성6
		2.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 및 2호선 혼잡도 개선	• 사업 단계별 진척도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사업 -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 사업추진 노력도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사업 -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14	정량8 정성6
	④ CEO 역점사업 (25점) (정량60,정성40)	1. 도시철도 및 육상교통 수송 증대	• 수송목표 달성도 평가 【도시철도】 - 수송목표 177,545천명 【육상교통】 - 시내버스 (35%) : 3,303천명 - 장애인콜택시 (25%) : 578천건 - 간선급행체계 (20%) : 1,206천명 - 청라신교통 (20%) : 1,609천명 • 수송수요 극대화 노력	18	정량11 정성7
		2. 월미바다열차 이용활성화 및 운송사고 제로화	•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 제로화 - 궤도운송사고 제로화(연간 0건) • 월미바다열차 이용활성화	7	정량4 정성3

2020년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40점)

□ 평가내용

○ 경영평가 지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경영성과	주요사업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기관 경영평가 점수 환산 적용
 - 점수 × 40% (공통지표 경영평가 반영 가중치)

2

경영혁신 추진 (5점)

2-1 청렴도 향상 (정량 2점)

□ 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내·외부 청렴도측정 결과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하여 평가
-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公社의 자체 추진 노력

□ 목표설정

-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량, 2점)

① 달성도 평가(1.0점)

- 목표치 : S등급(80점 이상)
- 평가방법 :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점수 합산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등급
합산점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50점 미만
특 점	1.00점	0.75점	0.50점	0.25점	0.00점

< 등급별 점수기준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종합청렴도 결과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 등급 >

구 분	'17년	'18년	'19년	3년 평균	'20년 목표
종합청렴도	2등급	2등급	3등급	2.3등급	1등급
반부패 경쟁력	3등급	2등급	면제	-	1등급

※ 부패방지 시책평가 2019년 면제(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및 외부지적 부패사건 0건)

② 개선도 평가(1.0점)

- 목표치 : 전년대비 등급 향상
- 평가방법 : 당년도 종합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등급의 개선도

구 분	2등급 이상 향상	1등급 향상	전년 동일 등급	1등급 하락	2등급 이상 하락
특 점	1.00점	0.75점	0.50점	0.25점	0.00점

□ 평가내용

-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및 성별 격차해소를 위한 여성 임원 및 위원회 참여율 확대 실적 평가
-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와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

□ 목표설정

① '20년 여성 임원 및 여성위원 참여확대 성과(정량, 1점)

- 목표치 : 기관업무특성, 공개모집지원 성향,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설정
 - ※ 임원의 경우 임명직 여성 임원, 위원은 위촉직 여성위원 기준(당연직 제외)
-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 임원 참여확대(0.5점), 여성위원 참여확대(0.5점)
 - 임원 및 여성위원 중 '20년도 기관목표가 없을 경우 해당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환산함

< 목표설정 근거 >

- ※ '20년 인천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등 확대운영계획 알림 (市 재정관리담당관 - 291, 2020. 1. 8.)

구 분	도시공사	교통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임 원	11.1%	10.00%	28.6%	12.5%	11.1%
위원회	11.6%	24.4%	38.9%	48.3%	20.0%

② 임원 및 여성위원 참여확대 제고 노력(정성, 2점)

- 평가기준
 -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한 성별 격차해소 노력
 - 여성임원 및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규칙, 방침 등) 마련(제·개정)
 - 균형인사 활성화를 위한 채용·승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강구 노력 등
- 평가방법 : 별표의 평점부여기준에 따른 9등급 절대평가

3

시정핵심과제 추진 (30점)

3-1

도시철도 운행사고 제로화 추진(혼합 16점)

□ 평가내용

- 도시철도 안전·정시운행 달성도 및 노력도 평가

□ 목표설정

① 도시철도 사고 및 장애 최소화 (정량 10점)

○ 평가기준

- 운행장애 : 1건 (정량 5점), 철도사고 : 0건 (정량 5점)

○ 득점기준

운행장애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비고
득 점	5.0	4.5	3.5	3.0	2.5	
철도사고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득 점	5.0	4.5	3.5	3.0	2.5	

※ 목표설정 근거 : 3개년 실적평균 기준(운행장애 4건, 철도사고 0.33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운행장애	2건	1건	2건	1.67건
철도사고	0건	0건	0건	0.00건

※ 운행장애 : 열차운행 계획시격보다 10분이상 지연된 경우(천재지변, 훈련, 투신자살 제외)로써 운행장애에 따른 열차지연을 의미

※ 철도사고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철도사고 보고지침 상의 철도사고(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와 철도재난을 의미

② 도시철도 안전도 향상노력 (정성 6점)

○ 평가기준

- 열차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점검, 정비, 훈련 등 이행실적
- 안전도 향상을 위한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실적

○ 평가방법 : 별표의 평점부여 기준에 따른 9등급 절대평가

□ 평가내용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사업의 성공과 사업추진 노력 평가
-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의 성공과 사업추진 노력 평가

□ 목표설정

① 도입사업의 단계별 진척도(정량 8점)

- 평가 및 득점기준

<7호선 연장구간 확보사업>

구분	석남구간 개통준비(종합시험 운영 단계별 시행)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이행	기존구간 운영업무 및 자산 등 인수	기존 및 신설구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장구간 운영권협약 체결 (운영권 확보)
득 점	4.0	3.6	2.8	2.4	2.0

※ 관련근거 :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서 및 운행시격 단축에 따른 추가협약서(2020.1.17.),
석남연장사업 종합시험운영 연간계획(2019.11.15.)

※ 운영협약 체결결과 및 건설본부 석남 건설공정에 따른 '단계별 진척도' 수정 예정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

구분	초도편성 의장 조립	양산품 구체제작	지상신호 외자재 반입 및 기계실 설치	시험용 대차 제작	차상·지상신호장치 제작승인 완료
득 점	4.0	3.6	2.8	2.4	2.0

※ 관련근거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분야별 추진계획
(사장방침 No.229, 기술융합2018-2472, 2018.09.13.)

※ 지상 및 차상신호장치 사업자선정 완료에 따라 사업수행일정 변경예정(2020. 2월)

② 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추진 노력(정성 6점)

- 평가기준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진 노력
-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노력

- 평가방법 : 별표의 평점부여 기준에 따른 9등급 절대평가

4

CEO 역점사업 (25점)

4-1 도시철도 및 육상교통 수송 증대 (혼합 18점)

평가내용

- 도시철도 및 육상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 수송수단별 수요 창출노력

목표설정

① 수송목표 달성도 (정량 11점)

- 평가기준 : 수송수단별 수송 증가 실적
- 평가산식
 - 득점 = (평점 ÷ 100) x 가중치(수송수단별)
 - 평점 = 기본점수 40점 + 당해연도 실적평가 60점
 - 당해연도 실적평가 60점

$$\text{평점} = \frac{\text{당해연도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도시철도 (정량 6점) 】

※ 최고목표는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의 110%, 최저목표는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의 50%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2020년 목표
수송인원(천명)	156,707	161,440	166,067	161,404.67	177,545

【 육상교통 (정량 5점) 】

구 분	계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간선급행체계(BRT)	청라신교통(GRT)
가중치	5.00 (100%)	1.75 (35%)	1.25 (25%)	1.00 (20%)	1.00 (20%)

※ 최고목표는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의 110%, 최저목표는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의 50%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2020년 목표
시내버스(천명)	2,751	2,903	3,354	3,002.67	3,303
장애인콜택시(천건)	441	520	615	525.33	578
간선급행체계BRT(천명)	1,037	1,059	1,193	1,096.33	1,206
청라신교통GRT(천명)	-	901	2,025	1,463.00	1,609

② 수송수단별 수송수요 창출노력(정성 7점)

○ 평가기준

【 도시철도 (정성 4점) 】

- 수송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 고객맞춤형 이벤트 등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각종 이행노력
- 도시철도 이용 확대를 위한 역사시설물 개선 노력

【 육상교통 (정성 3점) 】

- 수송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 정시성 확보 등 육상교통 신뢰성 제고 노력

○ 평가방법 : 별표의 평점부여 기준에 따른 9등급 절대평가

평가내용

- 월미바다열차 운행안전성 평가
- 월미바다열차 고객만족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 노력도 평가

 목표설정

① 궤도운송사고 제로화 (정량 4점)

- 평가기준 : 운송사고 0건
- 득점기준

운송사고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비고
득점	5.0	4.5	3.5	3.0	2.5	

※ 『궤도운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승객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② 월미바다열차 이용활성화 (정성 3점)

- 평가기준
 - 이용편의성 제고 및 관광인프라 확충 노력 등 고객만족도 향상
 - 유관기관 협력, 주변 관광시설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평가방법 : 별표의 평점부여 기준에 따른 9등급 절대평가

< 평점 부여기준 >

□ 정량지표

- 평가산식 : 지표별 적용된 평가산식 및 득점기준 적용

□ 정성지표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등급구분 및 평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 30점	30점미만 ~ 20점	20점미만 ~ 0점

- 득점산정 : 평점 × 가중치

□ 기타사항

- 평가지표별 평점, 득점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 별표 5 >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점 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75점 이상	65점 이상	65점 미만
등 급	S	A	B	C	F

< 별표 6 >

연임 보장 기준

1.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거나 동일평가군에서 전국 순위가 상위 10%이상인 경우로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
2.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2년 연속 '나'등급이상을 받고, 임기 중 최종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
3. 임기 중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총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전국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로서, 임기 중 최종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 해임 기준

1. 임기 중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이거나 동일평가군에서 전국 순위가 하위 5%이하인 경우로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다만, 취임직전연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또는 전국순위 하위 5%이하)을 받은 경우이거나 취임 이전에 완료된 사업의 결과 또는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외적변수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2. 임기 중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라'등급 이하를 받거나 동일평가군 전국순위가 하위 20%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연도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다만, 취임 직전연도 경영평가가 '라'등급(또는 전국순위 하위 20%)이하인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3. 임기 중 경영평가 평가등급이 전년대비 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또는 동일 평가군 중 전국순위가 상위 40%이내에서 하위 20%이하로 하락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다만, 취임 이전에 완료된 사업의 결과,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외적변수 등으로 인해 경영이 갑자기 악화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가능

< 별표 8 >

기본연봉 조정표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市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단위, %)				
		S	A	B	C	F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가	0 ~ 10	0 ~ 5	0 ~ 3	0	0 ~△5
	나	0 ~ 5	0 ~ 3	0 ~ 2	0	0 ~△5
	다	0 ~ 2	0 ~ 1	0	0	0 ~△5
	라	0	0 ~△2	0 ~△3	0 ~△4	0 ~△5
	마	△5.0~△7.5	△5.6~△8.0	△6.1~△8.5	△6.6~△9.0	△7.1~△10

< 별표 9 >

평가금 지급률

경영평가,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연봉월액 기준)

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급률	400~301%	300~201%	200~100%	0%	0%